

서울중앙지방법원 2023. 10. 25 선고 2023가단5085143 판결 [사해행위취소]

전 문

원 고 경기신용보증재단

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목민

담당변호사 배은서

피 고 1. A

2. B

변 론 종 결 2023. 10. 11.

판 결 선 고 2023. 10. 25.

주 문

1. 피고 A는 원고에게 55,691,411원 및 그 중 20,090,110원에 대하여는 2022. 6. 8.부터, 34,999,764원에 대하여는 2022. 7. 5.부터 각 2023. 4. 4.까지는 연 8%의, 각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%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.
2. 가. 피고들 사이에 충청북도 괴산군 C 전 2,046㎡에 관하여 2022. 4. 14. 체결된 매매예약을 취소한다.
나. 피고 B은 피고 A에게 위 제2. 가.항 기재 토지에 관하여 청주지방법원 괴산등기소 2022. 4. 15. 접수 제7545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.
3.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.
4.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.

N

청 구 취 지

주문과 같다.

이 유

1. 기초사실

가. 피고 A의 신용보증약정 체결

1) 원고는 피고 A가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받는데 필요한 신용보증을 하기로 하고 다음 표와 같이 각 신용보증서를 발급해 주었다(이하 이에 따른 약정을 ‘이 사건 각 보증약정’이라 한다).

보증채권자	신용보증일자	보증번호	보증원금	보증기한
중소기업은행	2019-07-19	D	45,000,000원 보증비율 : 90%	2024-07-19
중소기업은행	2020-03-27	E	10,000,000원 보증비율 : 100%	2025-03-20
F 주식회사	2021-11-10	G	20,000,000원 보증비율 : 100%	2022-11-10

2) 피고 A는 이 사건 각 보증약정에서, 원고가 보증사고 발생으로 피고 A를 대위하여 보증채무를 이행할 경우 원고에게 대위변제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과 기타 부채채무를 변제하기로 하였다.

3) 대위변제금에 대한 지연손해금율은 대위변제일로부터 현재까지 연 8%이다.

나. 원고의 대위변제

피고 A는 2022. 4. 26. 이자연체로 위 대출금에 대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고, 원고는 아래 표와 같이 각 대위변제일자에 각 보증채권자들에게 총 55,540,114원을 대위변제하였다. 원고는 그 중 450,240원을 회수하였고, 확정지연손해금은 97원, 채권보전비용은 601,440원이다.

보증채권자	대위변제일	대위변제금(원)	회수금액(원)	대위변제잔액(원)
중소기업은행	2022-07-05	25,418,772	310,010	25,108,762
중소기업은행	2022-07-05	10,031,232	140,230	9,891,002
F 주식회사	2022-06-08	20,090,110	-	20,090,110
합계		55,540,114	450,240	55,089,874

다. 이 사건 매매예약에 따른 가등기 경료

피고 A는 2022. 4. 14. 피고 B와 사이에 그 소유의 충청북도 괴산군 C 전 2,046㎡(이하 ‘이 사건 부동산’이라 한다)에 관하여 매매예약(이하 ‘이 사건 매매예약’이라 한다)을 체결하고, 같은 날 피고 B 앞으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(이하 ‘이 사건 가등기’라 한다)를 마쳐주었다.

[인정근거] 다툼 없는 사실, 갑 제1 내지 5호증(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)의 각 기재, 변론 전체의 취지

2. 원고의 피고 A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

위 인정사실에 의하면, 피고 A는 원고에게 55,691,411원(남은 대위변제금 55,089,874원 + 확정지연손해금 97원 + 채권보전비용 601,440원) 및 그 중 남은 대위변제금 일부 20,090,110원에 대하여는 대위변제일인 2022. 6. 8.부터, 나머지 일부 34,999,764원에 대하여는 대위변제일인 2022. 7. 5.부터 각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일인 2023. 4. 4.까지는 약정 지연손해금율인 연 8%의, 각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레법이 정한 연 12%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.

3.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

가. 피보전채권의 존재

1)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 발생한 것임을 요하나, 그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

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고,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기하여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,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(대법원 2000. 2. 25. 선고 99다53704 판결 등 참조).

2)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이 사건 각 보증약정에 따라 대위변제를 하고 이후 대위변제금 중 일부를 회수함으로써 피고 A에 대하여 남은 대위변제금 등 55,691,411원 상당의 구상금채권(이하 '이 사건 구상금채권'이라 한다)을 확정적으로 취득하였다.

3) 원고의 피고 A에 대한 이 사건 구상금채권이 발생하기 전인 2022. 4. 14. 이 사건 매매예약이 체결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, 앞서 인정한 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, 즉 ① 이 사건 매매예약 체결 당시 이 사건 구상금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인 이 사건 각 보증약정이 이미 체결되어 있었던 점, ② 이 사건 매매예약일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피고 A가 보증사고를 일으켰는바, 이 사건 매매예약 체결 당시 가까운 장래에 원고의 피고 A에 대한 구상금채권이 발생할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던 점, ③ 실제로 원고가 이 사건 각 보증약정에 따라 대위변제금을 지급하고 피고 A에 대한 이 사건 구상금채권을 취득함으로써 그 개연성이 현실화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, 원고의 피고 A에 대한 이 사건 구상금채권은 이 사건 매매예약에 대한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.

나. 피고 A의 무자력

앞서 본 증거들, 이 법원의 법원행정처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, 이 사건 매매예약 당시 피고 A의 적극재산으로는 이 사건 부동산이 유일한 사실(공시지가 30,076,200원), 그 무렵 이 사건 각 보증약정상 피고 A의 채무만 위 가액을 초과하고 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, 이에 의하면 피고 A는 이 사건 매매예약 당시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.

다. 사해행위의 성립 및 사해의사

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피고 A는 채무초과 상태에서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B와 이 사건 매매예약을 체결하고 피고 B에게 이 사건 가등기를 마쳐주었는바, 이 사건 매매예약은 원고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되고, 채무자인 피고 A의 사해의사 및 수익자인 피고 B의 악의는 추정된다.

라. 소결론

따라서 이 사건 매매예약은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고, 그 원상회복으로서 피고 B은 피고 A에게 이 사건 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.

4. 결론

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각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모두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.

판사 박예지